

영등포구의회
제157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10. 12. 3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11. 12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응분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구의 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 책무(안 제4조)
- 의전상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-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■ 관련법규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국가유공자 생업지원 조례 제·개정 협조(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공문 2010. 8. 24)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중구, 성동구, 중랑구 등 16개 자치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응분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의 책무를 명시하고,
 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우,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을

-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사항을
- 안 제10조에는 희생·공헌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.
-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제1항에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2010. 8. 24일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생업지원에 대한 조례 반영을 요구한 바 있어,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12. 3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국가보훈법

[시행 2009. 5. 1] [법률 제9395호, 2009. 1.30, 일부개정]

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예우 및 지원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.

제19조 (예우 및 지원의 실시)

- ①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)

- ①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1조 (권리의 보호)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.

제24조 (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·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,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
제30조 (민간의 참여조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0. 9. 1] [법률 제10337호, 2010. 5.31, 타법개정]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제5조(유족 등의 범위)

-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3.28>
1. 배우자[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(事實婚)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]
 2. 자녀
 3. 부모
 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-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. <개정 2008.3.28>
- ③삭제 <1994.12.31>
-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,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. <개정 2008.3.28>
-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,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, 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, 「병역법」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3.28, 2009.6.9>
-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3.28>

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

- ①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.
-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1.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,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.
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1. 사망한 경우
 2.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3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

제68조의2(생업지원)

-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,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